

2006년 8월

석사학위 논문

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法的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이 용 남

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法的 研究

A Legal Study on the Audit System in Corporation

2006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대학원

법 학 과

이 용 남

# 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法的 研究

지도교수 김 영 곤

이 논문을 법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4월 일

조선대학교대학원

법 학 과

이 용 남

# 目 次

## ABSTRACT

<b>第1章 序 論</b> .....	1
第1節 研究의 目的.....	1
第2節 研究範圍와 方法.....	3
<b>第2章 外國의 立法例</b> .....	4
第1節 美國.....	6
第2節 獨逸.....	11
第3節 日本.....	17
<b>第3章 現行法上의 監査制度</b> .....	23
第1節 監査制度의 變遷.....	23
第2節 商法上의 監査制度.....	27
1. 監査制度.....	27
2. 監事委員會制度.....	43
第3節 特別法上의 監査制度.....	46
1. 證券去來法上의 監査委員會의 構成.....	46
2. 外監法上의 監査制度.....	52
<b>第4章 株式會社監査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b> .....	58
第1節 問題點.....	58
1. 監事를 두는 경우.....	58

2. 監査委員會制度의 問題點.....	61
第2節 改善方案.....	64
1. 監事制度의 改善方案.....	64
2. 監査委員會制度의 改善方案.....	67
<b>第5章 結 論.....</b>	<b>75</b>
<b>參考文獻.....</b>	<b>79</b>

# ABSTRACT

## A Legal Study on the Audit System in Corporation

Li Yong Nan

Advisor: Kim Yong-Gon, Ph. 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

A corporation is as the representative one of company on property which is made by capital combination and the main constituent of current complex economy activity, a form of an enterprise which plays on important role leading national economy.

Supervision of corporation is carried out by auditor, bodirectors, shareholders and investigators, according to the Co Code.

Audit committee system supervise companies which they can be changed clear management to the unclear management. Korea Audit committee have outside director which supervise the management of business employee by insider company system and board of directors. In addition it have Audit committee system that organised board of directors constituent which introduce revision commercial law in 1999 and rules audit committee system not board of directors constituent but independent superintendence organ.

Accordingly the monograph look at principle nations of enterprise government on structure to solve Korea enterprise management of clarity problems. Futhermore, it presen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bout Audit committee system especially focus on studying Audit committee system to establish enterprise management of clarity.

Audit system and audit committee system, each one of them has merits & demerits. So, it is difficult to conclude which system is better than other. I think it needs the widely study and continuous discussion for better the audit system in Korea and I sincerely expect that the discussion mentioned above will serve as □ good reference for Korean corporation audit system to have realistic effectiveness and propriety and to be a cornerstone in foundation of national development and an enterprise growth.

The structure of this paper, we look into the an instance legislation of every country with the first chapter and the second chapter, and find out Audit committee system under the law in third chapter, in the fourth chapter we look into all of problem of Audit committee system and find out the improvement plan with the problem of incorporate, the last, we do the review to be the generalization in the fifth chapter conclusion.

# 第1章 序 論

## 第1節 研究目的

주식회사는 일반대중으로부터 자본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기업형태로서,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그 기본으로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역할은 매우 크며,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효율적인 경제주체라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재화용역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사회자원의 분배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주식회사는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일반인들의 기대에 쫓아 자선, 복지 등의 활동을 통해 축적된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도 한다.<sup>1)</sup>유한책임제도의 논리필연적 귀결로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요청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회사재산만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가 되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사재산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둘째, 다수의 주주가 집단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의사의 분열로 경영의 정체가 생길 수 있어 결국 주주의 감시비용을 높이고 투자수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의 보호를 위해서나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기업의 업무 또는 회사에 관한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상법은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기업이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인 분식결산, 위법배당 및 회사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병리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경영자지배, 일반주주들의 경영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지배주주의 지위남용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작업, 이른바 ‘기업지배구조 개선’<sup>2)</sup>논의가 20세기 초반부터 지속되어 왔다.

---

1) 이철송,『회사법 강의』 제8편, 박영사(2000),3면.



1990년대에 들어와 경영의 비효율 등 기업지배구조상의 각종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대규모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경영감독기구에 관한 법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 하여 왔으며 또 자국의 회사법을 개정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미 분리, 재벌의 선단식 경영, 지배주주의 영향권 아래에서의 불공정한 감사제도 등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형해화된 감사제도를 실효화하기 위한 방안이 199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던 중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그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그 결과 1999년의 상법 개정과 2000년 및 2001년의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식의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된 지 약 5년여가 지난 지금 이 제도는 기업 내 감사에게 기업의 투명성을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과거의 제도에 비하여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 다소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각국의 현행 감사제도를 고찰하고 한국의 감사제도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운영과 구성,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상법의 조항을 살펴 한국의 감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한국에서는 “corporate governance”를 통상 기업 내지 회사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본에서는 기업의 통치구조 내지는 관리기구로 해석되는 등 나라에 따라 다르다.

## 第2節 研究範圍와 方法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1장 서론에서는 전체적인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구시 목적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제도와외의 비교검토를 위하여 주요 외국의 주식회사 경영감독구조 및 감사제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상법상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변천과정을 검토한다. 1999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감사위원회제도는 기존 감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감사제도의 취지 및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의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사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 본다.

제4장에서는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제도를 법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실태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제6장에서는 각 장의 연구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요약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주식회사 감사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 및 연구논문에 의한 이론적 접근과 국내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실증적 접근을 병행하였다.

## 第2章 外國의 立法例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출자자들의 모임인 주주총회의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 회사의 경영과 감독기관의 존재방식과 그 권한에 따라 둘로 나뉜다.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구조의 주요모델로는 영미법상의 이사회제도와 독일법상의 감사회제도를 양대 기본모델로 들 수 있는데, 양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경영과 감독이 하나의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에 있는 것이다.<sup>3)</sup> 즉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이 이사회에서 담당하는 일원주의와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이원주의로 분류된다.

일원주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를 업무담당이사(executive director)와 비업무담당이사(non-executive director)로 구분하고, 업무담당이사의 수보다 비업무담당이사의 수를 많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일원적 제도 하에서는 업무담당자와 업무감독담당자가 분리되는 것이 보통인데 일원적 제도 하에서도 그 실제운용은 비업무담당이사가 업무담당이사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이원적 제도와 실질을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일원적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 영국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일원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는 각 회사가 자유로이 경영관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원적 구성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일원적 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의한 감독기관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sup>4)</sup>

3) 임중호, “주식회사 경영감독제도의 개편방향”, 「법학논문집」 제24집 제1호, 중앙대학교, 2000, 122쪽

이원적 제도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독일법이다. 독일법에서는 주식법 및 공동결정법(MitbestG: Mitbestimmungsgesetz)이 적용되는 일부의 유한회사와 주식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AufAktien)등의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의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감사회(Aufsichtsrat)를 두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독일과 같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이원적 제도를 가진 국가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덴마크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공개회사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는 이원적 구성방식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도 실질적인 이원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원적 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감사회의 감독 아래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게 되고 감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해임되게 된다. 또한 이사는 감사회에 의하여 선임, 해임되며 이사와 감사의 겸직은 금지되게 된다. 또한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감사회에 그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감사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감독과 관련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경우에는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원적 제도 하에서는 감사제도의 본래의 기능인 주주의 보호 및 회사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이원주의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에서 행하는 경영판단에 대하여 감독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인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sup>5)</sup>.

---

4) 이범찬 오옥환,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7~8면

5) 정병석, “주식회사의 기관구성과 권한의 분배”, 「상사법 연구」, 제11집, 한국상사법학회, 1992, 220쪽.

## 第1節 美國

미국에서는 19세기 말에 와서 각주의 일반법을 통해 회사설립에 관한 준칙주의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당시에 메사추세츠 주를 제외하고는 어느 주도 회사법에 감사제도를 규정하지 않았었다. 미국의 주식회사의 감사기능은 전통적으로 이사회가 담당해 왔다. 대부분의 주에서 회사의 감사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설치하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점차 이사회에 한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회사의 경영을 이사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으나<sup>6)</sup> 실제로는 대부분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CEO)가 전담함으로써 이사회는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다. 특히 사외이사(outside director)<sup>7)</sup>들의 비율이 점증하면서 이들이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sup>8)</sup> 회사의 경영을 이사회가 한다는 명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기업현실을 반영하여 회사의 경영은 경영진이 담당하고, 그 대신 이사회는 경영진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회사의 경영이 경영진에 일임됨으로써 그 만큼 사후적으로 경영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시되게 되었다. 그런데 사외이사의 증가로 전체 이사회에 소집 곤란 등의 상황은 이러한 각종 기능을 담당할 이

---

6) Robert W.Hamilton,The Law of Corporations in a Nutshell(4th ed),st.paul:WEST PUBLISHING CO.1996,pp.335-337

7) 사외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상근이사 등 유사용어가 있지만 사외이사의 최소한의 요건은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건식,윤영신, “새로운 경영감독체제의 모색”. 「상장협」,제38호,1998.10,105면)

8) 1972년 주요대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설립된 경영자 단체인 Business Roundtable도 대규모 공개회사의 경우 이사의 압도적 다수가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사회의 권한을 점차적으로 소수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각 주법은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가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각종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sup>9)</sup> 이들 위원회로는 통상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감독을 담당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위원회(compensation), 이사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인사위원회(nominating committee) 등을 들 수 있다.<sup>10)</sup> 이 가운데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회이다.

이러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공식적 논의는 1939년에 발생했던 Mckesson and Robbins 회사사건<sup>11)</sup>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NYSE)는 1939년 ‘독립감사와 감사절차(Independent Audits and Audit Procedures)’ 라는 보고서를 공표하였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은 분식결산을 막기 위하여 이사회가 외부감사인을 지명하거나 선임할 것, 만약 이사회가 외부감사인을 지명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임원이 아닌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특별이사위원회(a Special Committee of the Board)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sup>12)</sup> 1940년에는 증권거래위원회

9) RMBCA §8.25;Del. GCL,§141(C);NY Bus. Corp.L. §712.

10) Hamilton,supra at 265.일본의 경우에도 2002년 개정법을 보면 대회사 또는 자본이 1억엔을 초과하는 회사로 정관에 규정을 둔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내에 지명위원회(미국의 인사위원회에 해당),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식 위원회제도를 채택한 것이다(日本商事特例法 第21條の 第1項,제2項).

11) 이는 9천만불에 달하는 총자산 가운데 1천만불의 재고자산과 900만불의 매출채권을 가공자산으로 계산한 분식회계사건이다(Clearing House.Exchange Act Release No.2707,December 5,1940,§3020)

12) New York Stock Exchange,"Independent Audets and Audit Procedures",122 Accountant 388(April,1940).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SEC)도 Mckesson and Robbins 회사사건 보고서 중에서 NYSE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특별이사회위원회의 의무로서 감사계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결정 및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업들은 이사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직접적인 의사전달이 감사위원회를 경유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소극적이었다.<sup>13)</sup>

1969년 미국공인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AICPA)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관한 의견서”를 공표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기에 이르렀으며<sup>14)</sup> 그 후 1969년과 70년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무렵 각 회사의 비리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1973년 뉴욕증권거래소는 감사위원회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하였으며 1974년에는 위임장을 권유할 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및 위원의 성명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뉴욕증권거래소는 1978년 7월 1일부터 상장을 신청하거나 또는 상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인가를 하여 주게되었다. 한편 SEC도 1978년 위임장권유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등록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이사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위원의 성명과 약력, 위원회의 역할 등에 관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sup>15)</sup>

---

13) Louis Braiotta, "Historical Perspective on Audit Committees(Appendex B)",The Audit Committee Handbook(3rd ed),p.349

14) SEC의 권고가 있는지 30년 후인 1970년의 조사에서도 감사위원회는 121사 중 32퍼센트만이 설치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40퍼센트는 AICPA의 권고시에 설치된것이라고 한다. R.K.Mautz & F.I.Neumann,The Effective Corporate Committee,Harvard Business Review,Nov.1970.at59:법무부, 각국의 최근 상법동향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판례와 주법(州法)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법원은 1973년 Peen Central 회사의 도산사건에서 공개되고 독립된 이사의 선임뿐만 아니라 사외 이사로 구성된 고문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충실한 제도로서 감사위원회를 들고 있다.<sup>16)</sup> 또한 1974년 Mattel 회사 사건에서는 사외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기업에 명령하는가 하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sup>17)</sup>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개정모범사업회사법(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에서 회사의 업무는 “이사회에 지시에 따라 집행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며(동법 §42), 1992년에는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가 공표한 회사지배원칙<sup>18)</sup>(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Restatement and Recommendations:이하 “ALI원칙”)에서 대규모공개회사<sup>19)</sup>는 주요 고위집행임원을

---

15) Louis Briotta, op.cit,at 356

16) Ibid, p 356.

17) Ibid, p 352.

18) 1992년 5월 13일 미국법률협회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현행 미국의 그에 관한 판례와 법규범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조문화한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분석과 권고(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Restatement and Recommendation)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본 원칙은 이사회가 그 감독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어떤 내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처럼 감사위원회가 정착됨에 따라 ALI원칙은 대규모공개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설치를 강제하는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하였고(§3.05), 더 나아가 소규모공개회사에서도 감사위원회를 둘 것을 회사에 대해 권고하였다(§3A.02).

19) 대규모공개회사는 ALI원칙 §1.24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현재 지분증권(equities securities)의 명부상의 소유자가 2000명 이상이고 자산이 1억달러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단, 회사는 연속한 2기의 회계연도(fiscal year)에 총자산이 1억달러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자산이 1억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대규모공개회사가 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대



비롯한 임직원이 경영을 담당하고 이사회는 이들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3.01).

1997년 이후 미국에서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주는 없고 그 설치를 임의화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가 상장규정을 통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신청하거나 상장을 계속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서만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강제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0)</sup> 다만 미국증권거래소(ASE)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상장요건으로 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다.<sup>21)</sup>

미국법상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법은 없다. 다만 미국의 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종의 근간으로 삼고 또한 각 회사들이 준수하고 있는 1992년의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원칙에서 일부나마 이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LI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임무는 ①회사의 외부감사인의 추천 및 해임에 대한 심사, ②외부감사인의 보수, 감사계약기간 및 독립성에 대한 심사, ③회사의 고급내부감사위원(senior internal auditing executive)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심사, ④외부감사인(그리고 고위회계담당임원)과 이사회 사이의 접촉창구로서의 기능, ⑤ 외부감사의 결과, 감사보고서, 그와 관련된 경영의견서, 외부감사인의 제안과 내부회계담당부서의 중요한 보고서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에 대한 심사, ⑥ 연차재무보고서, 외부감사인이 재무보고서와 관련하여 제출하거나 행한 증

---

규모공개회사는 대체로 상장회사와 일치한 것이다.

20) New York Stock Exchange, Listed Company Manual §303: 1987년 이후 미국전국증권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NASD)도 NASDAQ에 상장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소는 1978년 이후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다.

21) American Stock Exchange, Listed Company Guide §121.

명, 보고서, 의견 및 검토에 대한 심사와,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에 위의 재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중대한 분쟁에 대한 심사, ⑦ 회사의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감사인(그리고 고위회계담당임원)과의 협의를 통한 검토, ⑧ 외부감사인 또는 주요 고위집행임원 등이 보고한 재무보고서작성의 회계원칙 및 관행의 중대한 변경 또는 기타 중대한 의문에 대한 검토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감사위원회의 주요업무는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보다는 회계감사에 치중하되 회계감사를 외부회계감사인에게 위임하고 있는 관계로 외부회계감사인들과 협조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 第2節 獨逸의 株式會社 監査制度

### 1. 監事會

독일법은 주식회사에 관하여 이사회제도와 감사회제도의 이원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즉 독일 감사회제도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감독이 이사회와 감사회라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독일 주식법상 감사회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61년의 독일보통상법전(ADHGB), 즉 독일구상법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구상법전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주식회사 기관의 권한은 전적으로 정관에 따라 정하여 졌으며, 그 당시 대부분의 회사정관에는 일반적으로 경영위원회(Verwaltungsrat)와 이사회(Direktion)라는 2개의 회의체를 인정하고 있다.<sup>22)</sup>

경영위원회는 대주주나 발기인이 선임한 자들로 구성된 정관상의 회의체로서 회

22) 임중호, 「독일의 주식회사감사제도」, 「회사법의 제문제」, 이범찬 편저, 1998, 386면.

사를 대표하고 나아가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 기구였으며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동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서 일상적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기구였다. 이처럼 정관상의 기구이었던 경영위원회는 1861년 독일구상법의 제정을 통하여 감사회라는 명칭으로 법제화(독일구상법 제225조)되었으며 처음으로 회사의 법정기관이 되었지만 당시까지만 하여도 감사회는 회사의 임의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설립에 관한 준칙주의를 택한 1870년의 주식법 개정으로 국가의 감독권이 약화되어 주식회사의 남설과 남용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감사회를 필요적 감독기관으로 법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감사회는 1897년의 독일제국상법전(신상법)에 수용되었으나 본 법에서는 감사회를 단지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감독기관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sup>23)</sup>.

1931년 대통령 긴급명령과 1937년 주식법에 따라 이사회와 독재적 자기책임제를 확립하면서 감사회의 업무집행권한이 배제되고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은 감사회와 결산검사인(Abschlussprüfer)으로 이원화되었다.

현행 주식법은 제111조 제4항에서 정관으로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회가 동의를 거절하면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감사회는 이사회와 상호 대립관계가 아니라 업무집행에 대하여 넓은 의미에서 상호 협력의 의미를 가지며, 기능적으로 볼 때 통제와 그에 대한 정보수집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이러한 독일의 감사회제도가 최근 독일에서 일부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자본시장의

---

23) 독일제국상법전 제246조 제1항에서는 감사회를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기관임을 명시하는 한편, 3항에서는 감사회의 법정된 권한인 감독권한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감사회의 업무집행권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감사회의 뿌리인 경영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 吉永榮助, “二層式機關組成: 監視機關の分離と強化の提案とこの根據”, 日, 「現代商事法の重要問題」(東京:經濟法會, 1984), p.140.

육성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998년 주식법 개정시 감사회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sup>25)</sup> 영미법상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 2. 監事會와 支配構造

감사회는 「노동자대표 없는 감사회」와 「사업체조직법에 의한 감사회」, 「공동결정법에 의한 감사회」와 「몬탄공동결정법에 의한 감사회」, 「공공결정보충법에 의한 감사회」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주식회사의 감사회에 노동자대표감사를 두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 광산공동결정법(Montanmitbestimmungsgesetz) 등이 적용되지 않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대표만으로써 감사회가 구성된다. 즉 노동자 500명 미만의 가족회사<sup>26)</sup>나 정치, 종교, 자선, 교육, 예술 기타 언론출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노동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하는 공동결정 등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회사의 감사회는 주식법 제95조에 따라서 3인 이상의 감사로써 구성되며, 이 경우의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게 되고, 특정 주주에게는 정관의 규정을 통해 감사의 3분의 1까지를 파견할수 있는 감사파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주식법 제101조 2항).

그러나 이처럼 소규모주식회사에 노동자대표를 감사회구성시 배제한 것은 얼마

---

25) Esser, Bank Power in West Germany Revised, 13 West.Politics, pp.26,27.

26) 가족회사란 1인에 의한 주식회사로 1인의 주주가 자연인이거나 당해 회사의 주주가 親姻戚關係에 있는 회사로 모든 주주가 친인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각각의 주주가 다른 주주와 친인척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오래되지 않았으며, 종래에는 500명 미만의 가족회사에 대하여도 경영조직법에 의거하여 노동자대표를 감사회에 참여시켜야 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1994년 8월 2일에 일명 소규모주식회사 및 주식법의 규제완화법을 제정하여 주식법과 감사회의 구성에 관한 경영조직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소규모주식회사가 500명 이하의 노동자를 둔 경우에는 유한회사와 동일하게 노동자대표 없이 주주대표만으로 감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7)</sup>

그러나 노동자 2,00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조직법 제76조에 의거하여 전체 감사 중 3분의 1은 노동자대표로 구성하고 3분의 2는 주주대표감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때 주주대표감사는 주주총회가 선.해임하며 노동자대표감사는 당해 회사의 노동자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시 2,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광업 또는 철강생산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사업목적이 정치, 종교, 자선, 교육이나 언론 등인 회사를 제외한 모든 주식회사는 1976년의 공동결정법<sup>28)</sup>에 의거하여 노사동수로 감사회를 구성하

---

27) Lutter, Das neue Gesetz für kleine Aktiengesellschaften und zur Deregulierung des Aktienrechts, AG 1994, S.445.

28) 공동결정법이 성립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50년 1월 독일노조연합(DGB)은 영국의 옛 점령지에서 시행되었던 기업단위 공동결정모델을 전산업으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연합은 인사 및 노동자 복지문제가 아닌 경제적 영역까지 공동결정이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극렬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자문위원회(Sachverständigenrat)를 설치하였으나 노조의 파업위협에 결실을 보지 못하고 1951년 철광업분야에 적용되는 공동결정법이 먼저 연방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후 철광업분야에 있어서는 노사 공동결정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2년에는 공장단위 공동결정의 모범인 공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법 내에 중소기업의 기업단위 공동결정에 관하여 규정을 두게 되었다. 1976년 공동결정법은 1951년 철광업 공동결정법에 비하여 노동자의 참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어 노조측의 불

도록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노동자 2000명 이상임을 고려하여 볼 때에 거의 대부분의 독일 주식회사가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감사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9)</sup>.

그리고 구체적인 감사의 수는 당해 기업의 노동자 수에 따라서 정해진다. 즉 1만명 이하의 회사의 경우에는 12인, 2만명 이하의 회사의 경우에는 16인 그리고 2만명을 초과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20인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제7조 1항). 그리고 노동자대표감사 가운데는 다시 노동조합대표와 당해 회사 노동자를 노무자, 직원, 관리직원으로 나누어 각각 그들의 수에 비례하여 선출되거나, 이 경우 각 그룹 당 최소한 1인씩을 노동자 대표감사로 선출하여야 한다(공동결정법 제15조).

1998년 개정 주식법에서 감사회구성원의 후보는 그의 선임에 앞서 현재의 직업을 주주에게 알리도록 하여 노동자대표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였다(독일주식법 제124조 3항, 제127조 3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후보가 다른 회사의 감사인 경우에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사전에 감사회 구성원들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독일주식법 제125조 1항, 제127조 4문). 그러나 감사기관인 감사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노사쌍방은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용이치 않고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상기와 같은 후보자의 공개만으로 감사회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사회구성원을 선임함에 있어 주주대

---

만이 유지되어 있었다. 특히 공동결정법상 감사회는 동수의 노사 쌍방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되었으나 최종결정권을 사용자측에 부여한 점이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한편 사용자측도 공동결정법에 반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본 소원이 기각됨으로써 공동결정제도가 정착은 되었으나 노사쌍방간의 감정적 갈등은 전통적인 조합주의적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9) 김성기,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31면.

표는 주주총회에서 단순 다수결로 정하므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노동자대표는 선정 과정이 복잡하다. 즉 노동자대표를 선정함에 있어 각 회사는 민주적으로 노동자들의 총의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협의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8,000명까지의 종업원을 둔 회사는 노동자대표를 선정함에 있어 간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각 일반 근로자 및 평직원, 관리자급 직원의 대표를 비례적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노동자 측 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만18세 이상의 피고용자로서 당해 기업에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고, 공직취임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감사회의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마찬가지로 5년으로 되어 있다.

### 3, 監事會의 權限

첫째, 독일의 감사회는 이사를 선임과 해임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독일 주식법 제84조)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사 선. 해임권은 1937년 독일주식법이 상법전에서 분리되기 이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권한이었으나 주식법을 제정하면서 감사회에게 이사의 인사권을 부여하고 감독의 기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경영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회의 이사 선. 해임권은 기관인 전체 감사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감사회는 이 권한을 감사회 산하의 인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도록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다(주식법 제107조 3항 2문)

둘째,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동법 제1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사가 특정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이사회 동의의 얻도록 함으로써(동법 제111조 제4항 제2호) 이사의 업무 집행 활동

을 통제하는 권한도 갖는다. 이를 통하여 감사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감독기관으로서의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에서는 감사회를 이사와 함께 회사의 운영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다.

셋째, 회사의 대표기관으로 이사와 회사 사이에서의 법률관계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동법 제112).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결의무효, 취소의 소송에서도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감사회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된다(동법 제246조, 제249조)<sup>30)</sup>

### 第3節 日 本

일본의 회사기관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감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감사제도는 1950년대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감사의 권한을 확대해 왔다<sup>31)</sup>. 특히 74년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상법특별법(이하 「상사특별법」이라 칭한다)’의 제정을 계기로 기업규모에 따라 감사규제도 차별화 하였고, 1993년 개정에서는 사외감독, 감사회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32)</sup> 이와 같이 현행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라고 하는 회사의 기관과는 상이한 미국형 기관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이사회로부터의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의 결정권한의 대폭적인 위임을 인정하여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의한 업

30) 임중호, “西獨株式法 112조에 의한 감사회의 회사대표권”, 「상사법연구」, 第6輯, 한국상사법학회, 1987.10. pp.215-216.

31) 北村雅史, “經營機構改革と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商事法務 第1603號, 2001, 9~17面; 元木伸, “監査役制度の變遷”, 企業會計, 第51卷 1號, 1999, 92面 以下 參照.

32) 前田庸, “商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要綱の解説(III)”, 商事法務 第1623號, 2002, 14面 以下 參照.



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대폭강화하기 위한 것이다.<sup>33)</sup>

## 1. 監査制度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 수행 결과로 1884년에 1,298개의 회사가 설립되었다.<sup>34)</sup> 이에 따라 마련된 상법전초안에 따르면 감사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권한으로 하는 임의기관으로<sup>35)</sup> 주주가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2~5명으로 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소집권을 인정하였다.<sup>36)</sup> 이 초안은 1890년 공포되어, 1893년 회사법 부분이 시행되었는데 초안과는 달리 감사를 필요기관으로 하였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1899년에는 감사의 수를 줄이고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이사 또는 지배인을 겸할 수 없도록 하며,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법개정이 이루어졌다.<sup>37)</sup> 1911년에는 임기를 다시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사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1938년 개정 상법은 일본 경제의 활성화에 맞추어 종래 주주에 한해 임명할 수 있던 감사를 주주 이외의 자도 임명

33) 독일의 감사회(Aufsichtsrat)는 합의체(boared)라는 점에서 일본의 감사회와 다르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감사의 주체를 감사회로 하고 감사는 단지 그 구성원으로 하는 방식인데, 일본의 경우는 감사의 주체는 감사로 하면서 감사회는 단지 감사의 권한행사를 용이하도록 보좌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관이다(片木晴彦, “監査役會と監査役の獨任制”, 商事法務 no.1336, 商事法務研究會, 1993, 18쪽).

34) 김영균,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법학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5, p.33.

35) 홍석제, “감사의 지위 및 책임”, 「裁判資料」, 第38輯, 서울:법원도서관, 1987, p.276.

36) 久保田音二郎, 「監査役監査制度」(東京:稅務經理協會, 1974), pp.3~4.

37) 上掲書, p.4.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자격이나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제268조), 감사선임결의무효 또는 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제280조, 제270  
조 및 제272조).

1950년 개정상법은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이사회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기관구조  
를 재편하면서 주주의 지위강화를 위하여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주식합자  
회사를 폐지하였다.<sup>38)</sup>

이사회제도는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합의체기관이다. 이차대전후 일본  
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기업의 부정과 비리도 증가하여 종래의 감사로는 회사  
의 부정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개정 전에도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사가 있었지만 이사의 임명, 해임권이나 중요 업무에  
대한 승인권이 없는 단순한 회계감사기관이었다.<sup>39)</sup>

1974년 개정상법에서는 감사의 업무감사권을 부활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  
을 고려하여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 권한을 다르게 규정하였다. 즉 자본금 5억 엔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사의 직무 행위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상법 제274조 제1항)과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도 받도록 하였다(상법특례법 제2  
조 제1호).

1981년 다시 감사제도를 포함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에서는 주  
식회사를 대. 중. 소회사로 구분하여 부채총액 200억 엔 이상 회사도 대회사로 취  
급한다고 규정하였다(상법특례법 제2조 제2호). 자본금 1억 엔 이상 5억 엔 미만은  
중회사라 하여 대회사와 같이 이사의 직무 집행 행위 전반에 걸친 업무감사권을  
부여 하면서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면제하였다. 그러나 자본금이 1억 엔 이하  
인 소회사의 감사에 대해서는 종래의 회계감사만 하도록 규정하였다.(상법특례법

38) 정차범,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기관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2, p.25.

39) 河本一郎, 「現代會社法」, 新訂第五版(東京:商事法務研究會, 1991), p.295.

제22조 내지 제27조)

1989년 개정상법은 감사의 임기 연장, 대회사 감사의 증원, 사외감사제도 도입, 감사회의 도입 등으로 감사의 지위 강화와 대회사의 감사제도 충실을 목표로 하였다.

## 2. 社外監事

1993년에 도입한 사외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회사에는 3명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그 중 1명은 취임 전 5년간 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아니었던 자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상법특례법 제18조 제1항). 사외 감사의 자격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은 이사로부터 독립된 감사에 의하여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회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sup>40)</sup> 그러나 이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지금까지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인물을 임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되, 적임자를 구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이사 등에 있었던 자 중에서 그 지위를 떠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현재 이사와의 관계가 회박할 것이고 따라서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sup>41)</sup>

## 3. 監事會

---

40) 大賀祥充, “監査役制度の改正”, 「法學研究」, 第66卷 12號(1993.12), p.250.

41) 김영균, 전계논문, p.32.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감사에 대한 부분의 개정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81년 회사법 개정 이후 감사회를 두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1984년 대. 소회사를 구분하는 입법과 합병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감사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sup>42)</sup> 이러한 논의는 1989년 일본법무성민사국법제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1993년 개정상법특례법에서는 대회사에 대하여 감사의 수를 증원하고 외부감사제도와 감사회를 규정하게 되었다.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기존 감사와 감사회의 권한이 서로 중복되어 감사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심의회가 1993년 2월 14일 총회에서 감사와 감사회의 권한 분배에 대해 결정한 「상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에 따르면 감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43)</sup>

첫째, 감사회는 법률에 정한 경우 외에는 그 결의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방법, 감사 보고 기타 감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이때 감사회는 감사에 관한 감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둘째, 감사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종료한 때 기타 다른 감사가 요구하는 때에는 조사 결과를 감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회는 감사의 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고 그 등본을 회계감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는 그 감사보고서에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넷째, 감사회는 그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회는 감사회 자체가 집단으로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며, 감사회의 결의도 각 감사의 직무 집행을 구속하지 않는다. 감사 업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각 감사가 독립제기관으로 독자적으로 집행한다(상법특례법 제18조의 2 제2항 단

---

42) 상계논문, p.36.

43) 商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要綱 第二の三 1.

서). 감사회는 각 감사의 감사 활동이 독립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기본적인 사명이 있을 뿐이다.

## 第3章 現行 法上의 監査制度

### 第1節 監査制度의 變遷

제정상법은 주식회사의 합리적인 운영기구의 구축을 위하여 영미법상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관 재편성과 권한 재분배를 단행하였다. 제정상법은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고(상법 361조),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운영 내지 업무집행에 관하여는 영업의 전문가로서 구성되는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이원적 업무집행기관의 권한사항으로 하였다(상법 393조, 389조 3항). 이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에 의하고 그 집행은 이사회가 선임하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현행 주식회사 운영의 기본구조가 구축된 것이다. 제정상법은 의용상법상의 감사역이 가지고 있던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이라고 하는 두 개의 권한 중에서 업무감사권은 이사회에게 이양하고 감사에게는 회계감사권만을 부여함으로써 감사를 회계감사기관으로 하였다.<sup>44)</sup>

따라서 제정상법은 이사회제도의 도입으로 감사의 지위가 법률상으로도 크게 약화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여 회사들은 자유방임적인 무모한 경영에 의하여 도산하거나 부실화하는 현상이 속출하였다.<sup>45)</sup>

이후 1984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감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개정상법은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즉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상법 410조). 감사의

44) 이범찬, 「주식회사감사제도론」(서울: 법문사, 1976), 100면 이하.

45) 최기원, 「新회사법론」 박영사(2001). 663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에게 업무감사권을 인정하고(상법 412조), 감사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였으며(상법 412조 2항), 이에 수반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①감사에게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며(상법 390조 2항), 이사회 소집절차의 생략도 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상법 390조 3항). ②감사의 이사회출석. 의견진술권과 이사회에서의 보고의무를 명문화하였다(상법 391조의 2). ③이사회 의사록에 출석이사와 함께 감사도 기명날인 하도록 되었다(상법 391조의 3). ④회사와 이사간의 소 에 관하여 감사가 그 소에 대한 회사대표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자의 선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상법 394조). 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감사에게도 인정하였다(상법 402조). ⑥ 각종의 소제기권자에 감사를 추가하였으므로 감사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상법 328조), 총회결의취소의 소(상법 376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429조), 자본감소무효의 소(상법 445조), 합병무효의 소(상법 529조) 등과 같은 각종의 소제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로 하여금 성실한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였다. ① 구 법상 감사기간이 1주간 밖에 되지 않아 형식화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4주간으로 연장하여 충분한 감사기간을 확보하였다(상법 447조의4 제 1항). ② 천편일률적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상법에 명시하였다(상법 447조의4 제2항). ③ 감사는 감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4년의 상법개정 이후 급속히 진전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위하여 1995년에 다시 상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감사의 지위의 독립성의 확보와 관련되는 사항이었다.<sup>46)</sup>

46) 법무부, 「상법(총칙.상행위.회사편)개정안 해설」(서울: 법무부, 1995), 68면 이하.

그 내용을 보면 제409조의 2를 신설하여 감사에게 주주총회에서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여 대주주 또는 경영진으로부터의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감사의 지위의 안정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상법 410조). 그리고 감사의 겸직금지범위를 확대하여 모회사의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상법 411조), 또 제412조의 4를 신설하여 모회사의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의 조사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종래에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하여 분식결산을 하는 등의 모회사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995년 개정상법에서 특기 할 것은 제412조의 3을 신설하여 감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하여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 점이다. 감사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은 의용상법상 감사역의 주주총회소집권(동법 235조 2항)에 비해서는 다소 약화된 형태로 입법화 되었지만 예컨대, 감사가 이사회와의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견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sup>47)</sup>이런 의미에서 보면 1995년 개정 상법상의 감사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은 감사의 직무수행을 일층 강화된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고 해석될 수가 있을 것이다.<sup>48)</sup>

1999년 12월 31일에 공포, 시행된 개정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주식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도록 하였다(상법 451조의2 1항). 1997년 말 외환위기 하에서 국제구제금융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합의한 사항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 부당한 기업이윤을 독립적 시각에서 감

47)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481쪽;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1, 852쪽.

48)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 645쪽 이하.



독함으로써 기업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감독제도에 있어 종래의 감사와는 달리 미국 등에서 발달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유명무실한 점을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2000년부터 기업에 감사위원회를 둔다는 목표 아래 실무팀을 구성, 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격과 권한 등에 대한 연구 작업에 착수하였고, 1년여 동안의 연구 및 각종 공청회와 심포지움 등을 거치면서 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그간의 기업풍토와 감사현실에서 종래의 감사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1999년 입법화하게 된 것이다.<sup>49)</sup>

결국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은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점과 1998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에 부합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감사위원회의 설치 없이는 담보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자고 하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한다.<sup>50)</sup>

1997년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의 충실화도모를 위하여 몇 가지 특례규정을 두었다.

감사선임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대주주는 친족 자회사 등의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통하여 사실상 감사선임권을 행사하여 왔다.<sup>51)</sup> 따라서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7년 개정증권거래법은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었다(증권거래법 191조의11 제1항). 즉 대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

---

49) 안신현,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실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 2003, 61면.

50) 정찬형, 전계서, 854면.

51) 이범찬, 오정환,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52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에 있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감사의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의 경우에도 선임과 함께 법정하고 있다(동법 제191조의 11).

종래에 감사도 임원이라고 하여 항상 그 선임과 보수의 결정을 이사와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감사도 대주주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감사의 선임과 보수의 결정은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의결토록 하였다(동법 191조의 11 2항).

주권상장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나(동법 191조의 12 1항). 1999년 12월의 개정증권거래법에 의하면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증권거래법 191조의 12 1항 단서).

## 第2節 商法上의 監査制度

### 1. 監査制度

#### 1) 監事의 資格

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으로 감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감사의 특성상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인 감사의 지위를 겸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상법 제411조). 또한 상법상 감사는 상근임을 요하지 않으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상근 감사를 두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2 제1항). 그리고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시 사외감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감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며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준법감시인제도를 두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이 되기 위하여는 금융관련법이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과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적극적 요건은 ①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금융관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이다(은행법 제23조의 3 제4항 1호, 증권거래법 제54조의 4 제4항 1호, 보험업법 제6조의5 제3항, 投信業法 제14조의2 제4항 1호, 從金業법 제5조의3 제3항).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는 자격요건은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융관련법에 의거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벌금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 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 직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다(은행법 제23조의3 제4항 2.3호, 증거법

제54조의 4 제4항 2.3호, 보험업법 제6조의5 제3항, 投信業法 제14조의2 제4항 2.3호, 從金業法 제5조의3 제3항).

## 2) 監事의 選任과 員數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409조 제1항). 다만 회사설립 시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즉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하며(상법 제296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하게 되는데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로 감사를 선임한다(상법 제309조, 제312조). 또 감사의 결원이나 직무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 제386조). 이를 가(假)감사 또는 임시감사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의 감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 감사의 선임기관을 주주총회로 한 것은 감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 감독하는 기관이므로 그러한 피감사기관과 대등한 조직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sup>52)</sup>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선임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그 선임된 감사에 대하여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위임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이 끝나면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登記하여야 한다. 판례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선임등기가 지연됨을 이유로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sup>53)</sup>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52)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476쪽.

53) 대판 1995.5.28, 94 다카 31440.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사는 보통결의로 선임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영향력이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는 감사가 중립성을 지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의 선임시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 정관으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위 의 비율을 낮출 수는 있으나 올릴 수는 없다(상법 제409조 제3항).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1997년의 개정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주식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종래와 같이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이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하여금 각기 100분의 3씩 소유시켜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방법이 차단되었다. 그러나 상법만이 적용되는 주권비상장법인은 여전히 대주주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가 우려된다.<sup>54)</sup>

감사의 원수에 관하여는 상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이상이면 충분하다. 상법상 감사는 단독기관이기 때문에 수인의 감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와 같이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자 단독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상법상 감사는 상근임을 요하지 않는다. 2인 이상의 감사가 있는 경우에 상근감사를 두고 상시의 감사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모든 감사가 전반적인 업무감사를 할 직무와 권한 및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상법상으로는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sup>55)</sup>

---

54) 최기원, 전계서, 666면.

55) 이범찬, 「주식회사 감사제도론」, 법문사, 1976, 114쪽.

### 3) 監事의 任期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주주총회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 까지이다(상법 제410조).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취임시기에 따라 3년보다 다소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 감사의 이러한 임기의 시기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정시가 아니고 ‘취임한 때’이다. 이러한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 의하여도 연장할 수도 없고 단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재임하는 것은 가능하다.<sup>56)</sup>

### 4) 監事의 終任

회사와 감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위임의 종료사유에 의하여 감사는 종임된다. 따라서 감사도 일반종임사유인 회사의 해임 또는 감사의 사임에 의하여 종료되고 또한 법정종임사유인 회사의 파산 또는 감사의 사망, 파산, 금치산에 의하여 종료된다. 다만 회사의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중의 회사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필요하므로 회사의 해산은 감사의 당연한 법정종료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sup>57)</sup>. 이 밖에 감사는 임기의 종료,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등에 의하여도 종임된다.

위의 감사의 종임사유 중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종임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하면 그러한 감사는 새로운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상법 제415조, 제386조 제1항).

위의 감사의 종임사유 중 회사에 의한 ‘해임’에 관하여는 상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즉 감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되는데 주주총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를 임기 중에 해임하는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 감사

56) 김영호, 「회사법신론」, 팔마도서(2000), 511면.

57) 정동윤, 전계서, 478면,

의 해임결의와 관련하여, 상법은 주주총회가 감사를 해임하는데 적정을 기하고 또한 감사의 지위를 안정, 강화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상법 제409조 2), 감사의 해임에 있어서 감사에게 의견진술권을 인정하고 있다.

감사의 중임도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 5) 監事의 報酬와 費用

감사의 보수에 대하여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415조, 제388조). 즉 감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와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감사의 보수결정방법을 법정하고 있는 이유는 감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와 감사의 관계는 위임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제415조), 감사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보통 그 취임 시에 회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그 액수에 관하여는 먼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여야만 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이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이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2항). 이는 감사의 업무집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sup>58)</sup>

상법은 감사의 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제687조 및 제688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 따를 때에는 감사가 그 비용이 직무집행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비용 면에서 충분한 감사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감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회사가 그것이 직무집행에 필요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

58) 정동윤, 전계서, 483면,

못하는 한 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민법의 원칙인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 감사의 비용청구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sup>59)</sup>

## 6) 監事의 權限

### (1) 會計 및 業務監査權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상법 제412조 제1항). 그리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 제2항). 즉 감사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업보고청구권과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이 있다. 이 경우에 영업에 관한 보고청구는 이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본다. 1984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업무감사권을 인정하면서 감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였다. 감사는 감사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문가의 보조는 구체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는 회계감사권뿐만 아니라 업무감사권도 있는데 업무감사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감사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을 감사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업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타당성감사권도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 ①법정한정설. 이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법성에 대한 감사권이 있을 뿐이고 다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상법 제413조, 447조의 4 2항 5호, 8호)에만 정당성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설이 다수설이다.<sup>60)</sup> 그 근거는 첫째, 이사회에 의한 감독과 달라서 업무집행의 타당성 내지 합목적성에 관한 판단은 그 직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sup>61)</sup> 둘째, 상법이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권을 감사 아닌

59) 박용길, “주식회사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8쪽.

60)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2001), 670면.



이사회에 주고 이사회로 하여금 그 타당성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sup>62)</sup> 셋째, 감사는 경영정책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당부판단의 능력이 없다고 정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까지 관여한다면 감사의 경영판단이 이사회에 경영판단에 우선하게 되어 기관분화와 권한배분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입장,<sup>63)</sup> 넷째, 감사의 감사권한이 타당성에 미친다고 하면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자유로운 판단을 구속하게 되고 또 상법은 이사회에서 타당성감사를 하기 때문이며,<sup>64)</sup> 다섯째, 유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적법성으로 제한된다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sup>65)</sup> ② 다음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한정하는 설에 의하면 감사는 명문의 규정으로 타당성감사를 인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업무집행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타당성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sup>66)</sup>

현행 상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타당성 감사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므로, 상법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법성감사에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사가 1인인 회사(상법 제383조 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사는 당연히 업무집행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에 대한 감사권도 있다고 할 것이다.<sup>67)</sup>

## (2) 子會社에 대한 營業報告要求權과 調査權

종래에는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한다거나 자회사

61) 서돈각, 第三全訂 「상법강의(상)」 1985, 403면.

62) 손주찬, 第十訂增補版 「상법(상)」, 2000, 873면.

63) 이철송, 第八版 「회사법강의」, 2000, 641면.

64) 정동윤, 전계서, 479면.

65) 양승규, 박길준, 第五版 「상법요론」, 1999, 335면.

66) 정희철, 「상법학(상)」, 박영사, 1989, 506면.

67) 최기원, 전계서, 672면.

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없었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자회사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철저한 감독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하였다(상법 제412조의 4).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 4 제1항). 이러한 권리는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 및 재산상태조사권을 행사하였으나(상법 제412조 제2항),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영업보고 요구권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보고를 요구하는 이유와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의 요구는 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하며 기타 지배인이나 사용인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sup>68)</sup>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회사의 감사의 영업보고요구 또는 조사권을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12조의 4 제3항).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회사가 진다. 모회사의 감사의 조사를 자회사가 거부한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조의 4 제2항 11호).

### (3) 營業報告要求權 및 業務財產調査權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 제2항). 이에 의해 감사는 회사 영업의 전반에 대한 운영 상황에 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 일반적 또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상시감사 또는 기중감사를 할 수

---

68) 최기원, 전계서, 672면.

있게 된다.<sup>69)</sup>

감사는 대표이사는 물론 그 밖의 이사에 대하여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의 실질적인 조사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인에 대하여도 직접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sup>70)</sup>

만일 이사가 이러한 보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사의 방해 또는 비협조에 의하여 감사에 필요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감사는 그 뜻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447조의 4 제2항 11호), 또 감사의 조사를 방해한 이사, 지배인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3호).

#### (4) 理事會 出席權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 2 1항).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감사가 이사회 결의사항을 알 필요가 있고, 또 감사의견을 이사회에 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둔 규정이다. 따라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감사에게도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390조 제2항), 소집통지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390조 제3항).

「의견을 진술」한다 함은 의안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감사의 이사회 출석은 감사권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이사회 의사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감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해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sup>71)</sup>

이밖에 감사는 이사회출석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의 행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감사는 이사회에의 출석의무도 있다는

69) 이범찬, 오옥환,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69쪽.

70) 이범찬, 전계서, 130쪽.

71)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01, 569면.

설<sup>72)</sup> 이 있으나, 이사회 의 의안이 감사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감사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상법 제391조의 2 제2항)이 없는 경우까지 이사회출석을 강제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이사회에의 불참이 감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출석의무는 감사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므로 감사의 출석의무는 없다고 본다.<sup>73)</sup>

#### (5)理事의 報告를 받을 權利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2조의 2). 감사에 대한 이사의 보고의무를 범정한 것은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 이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이에 대한 감사의 감사를 촉구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가급적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사가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이다. 이 경우에 그 손해의 회복가능성이 있더라도 보고하여야 한다. 이점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유지청구권행사의 요건(상법 제402조)과 다르다.

보고의무를 지는 이사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이사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이사가 보고하여야 할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모두 보고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 (6)理事의 違法行爲에 대한 留止請求權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

---

72) 손주찬, “상법개정안에 있어서의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특색”, 『考試研究』(1983.2), 183면.

73) 최기원, 전게서, 674면.

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

유지청구는 일종의 보전행위라는 점에서 상법 제407조의 직무집행정지제도와 목적을 같이하나 전자는 반드시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후자처럼 이사의 권한을 일반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행위를 저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지청구권의 기원은 영미법상의 금지적 유지명령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사전에 이사의 위법행위를 금지시켜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sup>74)</sup>

#### (7)株主總會 召集請求權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 해임을 포함하여 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소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회사의 기관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뜻을 갖는다.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412조의 3 제1항). 감사의 총회소집청구권은 정관으로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회의 총회소집권의 독점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의 보완적 수단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정이유 역시 이 규정은 감사의 조사나 이사의 보고에 따라 감사가 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여도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감사가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75)</sup>

---

74) 서돈각.정완용, 「상법강의(상)」, 법문사,1999,470면.

75) 정동윤. 이기수. 김교창. 양승규.이범찬. 박길준. 손주찬, 「상법개정안해설」, 법문사,1995,143면.

#### (8) 會社代表權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訴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원래는 대표이사가 대표하여야 하지만 소송수행의 공정을 위해 객관적, 중립적 기구로서 감사에게 소대표권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소제기 여부의 결정권도 감사에게 있다. 또한 회사가 주주로부터 이사에 대한 소의 제기를 청구 받은 경우도 같다(상법 제394조 제403조 제1항).

감사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수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필요는 없고 그 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면 되고 어느 감사가 대표할 것인가는 감사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sup>76)</sup>

감사의 소대표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한편 회사가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sup>77)</sup>

#### (9) 各種 訴權

주주 및 이사와 함께 감사에게도 회사법상 각종 소제기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감사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상법 제328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제1항),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 자본감소무효의 소(상법 제445조),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 제1항),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의 소(상법 제530조의 11)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가 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자본감소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사는 주주가 소를 제기한 때와 마찬가지로 담보제공의무가 면제된다(상법 제377조, 제430조).

76) 홍석제, “감사의 지위 및 책임”, 「諸問題」(下), 293면.

77) 이철송, 전계서, 570면.

#### (10) 監事의 解任에 관한 意見陳述權

1995년 개정상법은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감사가 그 해임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상법 제409조의 2). 이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위안정과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주총회의 의안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므로 감사의 의견진술과 관계없이 해임에 관한 의안이 주주총회에 제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있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감사가 해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sup>78)</sup>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감사는 주주총회 개최 중에 감사인 자와 감사결원의 경우 새로운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 의무가 있는 자(상법 제415조, 제386조 제1항),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상법 제415조, 제386조 제2항), 감사의 직무대행자(상법 제415조, 제407조)를 포함한다. 감사의 의견진술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해임에 관한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에 대한 의견도 진술할 수 있다고 본다.

감사의 의견진술은 결의의 공정을 위한 청문적 성격을 가질 뿐이며,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사실상의 영향을 미치지만 주주총회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은 감사에게 의견진술의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감사의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것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sup>79)</sup>

### 7) 監事의 義務

---

78) 최기원, 전계서, 675면.

79) 이철송, 전계서, 570면.

### (1) 善管注意義務

감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제415조, 제382조 제2항), 감사는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진다.

### (2) 理事會에 대한 報告義務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 2 제2항). 이러한 감사의 의무는 유지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사회로 하여금 손해의 사전적인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인정한 것이다.<sup>80)</sup>

### (3) 監査錄의 作成義務

감사는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413조의 2 제1항).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413조의 2 제2항).

1984년 상법이 감사록의 작성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감사의 권한강화와 관련하여 감사가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가 임무해태를 하였을 경우 책임추궁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sup>81)</sup>

### (4) 株主總會에서의 意見陳述義務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상법 제413조).

이사에 대한 최종적인 견제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감사의 이사에 대한

---

80) 최기원, 전게서, 679면.

81) 권상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6집, 한국기업법학회, 2000,327면.



견제도 궁극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의 의견진술은 감사기능의 가장 실효적이지 결론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sup>82)</sup>

#### (5) 監査報告書の作成. 提出義務

감사는 이사로부터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상법 제447조) 및 영업보고서(상법 제447조의 2)의 제출을 받아 이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조의 4 제1항). 즉 총회일의 2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 상법은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까지 법정하고 있는데(상법 제447조의 4 제2항), 그 이유는 감사의 형식화를 막고 전문화를 도모하여 감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주주들에게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감사의 감사를 위한 직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본다.

### 8)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제1항). 「임무해태」란 고의·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각종의 권한행사를 게을리 한 경우도 포함된다.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제2항). 예컨대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상당기간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83)</sup>

감사가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

---

82) 이철승, 전거서, 571면.

83) 대판 1988.10.25. 87다카 1370.

임이 있는 때에는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제3항). 감사의 책임은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으며(상법 제415조, 제403조~제406조), 총주주의 동의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 2. 監査委員會制度

### 1) 意義

1999년 개정상법은 감사에 대체할 수 있는 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과 같이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규정을 두어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는 둘 수 없게 하였다(상법 제415조의 2 제1항). 이 감사위원회제도를 미국의 감사위원회를 본 받아 이사회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두게 하고 감사와 같은 권한을 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권만 가지는 것과 달리 상법상으로는 감사위원회가 업무감사권도 가진다. 다만 감사가 이사회와는 관련성이 없는 독립적인 대등한 지위에 서는 것에 비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는데서 기능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 監査委員會의 設置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내에 감사와 같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1항).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며,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및 증권회사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 2)를 설치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7 제1항, 제54조의 6 제1항). 금융기관의 경우도 같다(은행법 제23조의 2 제1항).

### 3)監査委員會의 員數와 資格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이사의 수가 1인이거나 2인인 회사는(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감사위원회가 존재할 수 없다.이사가 3인인 경우에도 같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사가 3인뿐인 경우에 이들 전원이 감사위원이 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사 전원이 이중의 지위를 갖는 것은 겸업금지 원칙(상법 제411조)에 반하기 때문이다.<sup>84)</sup>

감사위원회의 자격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감사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3분의 2이상 선임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2항). 즉 ①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②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③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④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⑤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⑥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⑦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가 감사위원회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 2 제2항 각호).

이밖에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1인이상 총위원의 4분의 1이상이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에 관해서도 자격제한이 있다(증권거래법 제54조의 6, 제191조의 17).

### 4)選任과 解任 및 任期

감사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는 내부기관이므로 이사회가 선

---

84) 최기원, 전계서, 684면.

정한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을 해임하는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15조의 2 제3항). 상법은 감사위원회의 임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것은 감사에 관한 규정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하도록 한 상법 제415조의 2 제6항에서 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상법 제410조)의 준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감사위원회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 내 위원회라는 데서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이나 이사회규칙 또는 감사위원회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관으로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이르기까지 연장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감사위원회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383조 제2항).

## 5) 監査委員會의 權限 및 義務

상법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인 제412조 내지 제414조의 규정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여 감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이 2 제6항).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권(상법 제412조), 이사로부터 중요사항에 관해 보고를 받을 권한(상법 제412조의 2),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 3), 자회사의 조사권(상법 제412조의 4),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의무(상법 제413조), 감사록 작성의무(상법 제413조의 2)를 진다. 이밖에 상법이 개별규정을 통해 감사의 권한이나 직무로 규정한 사항들도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이다.

감사는 적법성에 대한 감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타당성에 대한 감사도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소수설이다. 다수설의 입장은 타당성의 감사는 이사회 결의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상법(1999)에 의하여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동 위원회의 위원은 종래의 감사의 지위와

동시에 이사로서 이사회의 감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원이므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에 대하여도 감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sup>85)</sup>

## 6)監査委員會의 責任

감사위원도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감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상법 제415조의 2 제6항, 제414조).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책임해제도 이와 같다(상법 제415조의 2 제6항, 제450조).

## 第3節 特別法상의 監査制度

### 1. 證券去來法上的 監査委員會의 構成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권회사, 주권사장법인,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도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2항).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강제되는 대규모 증권회사와 주권사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는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제54조의 6 제2항, 제191조의17 제2항)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지배구조개선 사업단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이하 사업단보고서)<sup>86)</sup> 장기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전원 사외이사로 할

---

85) 최기원, 전계서 685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1) 監査委員會의 構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191조의 17)<sup>87)</sup>. 1999년 개정상법도 이사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는데(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제415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은 일정범위의 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였다. 즉 감사위원회는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고(법 제54조의6 제2항),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의 결격사유(법 제191조의12 제3항)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근검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결격사유 중 제6호(당해 법인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동조 제3항).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감사위원회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상법 제415조의 2 제2항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동법 제5항).

---

86) 법무법인 세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최종보고서 및 법개정 권고안(2000.6) 참조.

87) 상법 제415조의 2 제1항은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므로, 임의기관이나 증권거래법시행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상설기관이다.

## 2) 監事의 選任 및 解任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에 한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법 제191조의 11 제1항).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3) 社外理事의 選任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 되도록 하되 이사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91조의 16 제1항).

사외이사제도란 현 경영진에 대해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로 하여금 경영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2000년 개정법이 사외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급적 현경영진에 대한 비판 내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한 지위에 있는 인물은 사외이사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다. 다만, 증권투자 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동조 제2항).

증권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54조의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동조 제3항).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동조 제4항).

주권상장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 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 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 4) 監査委員의 資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sup>88)</sup>은 1인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나, 다만 증권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법 제191조의 12 제1항).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상근감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동조 제3항)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8)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4. 이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6.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 직원이었던 자
7. 위 제5호 및 제6호 외에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5)社外理事의 機能

사외이사의 통일적인 개념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외이사의 기능에 대한 정의도 일원적이지는 않다. 감사제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외이사 역시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구성원인 것을 감안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이사로서의 본연의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며 이에 기인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로서 집행임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으며 실제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가 기업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기능이 바로 사외이사제도의 특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집행의 감시감독기능이다. 개정상법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본연의 이유가 바로 독립성을 확보한 사외이사가 집행임원의 감시 감독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 (1) 理事로 本然의 機能

#### ① 理事로서의 義務와 機能

사외이사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개개인의 이사로서, 그 직무와 권한을 가지며, 그 임무는 대표이사 또는 업무담당이사 내지 이른바 사내 이사 또는 상근이사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sup>89)</sup> 따라서 사외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며(상법 제382조, 민법 제681조) 회사를 위하여 권한에 따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의 3).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내용도 원칙적으로 사내이사의 그것과 차이는 없다. 따라서 상법상 이사회에게 인정되고 있는 각종의무와 이사회에의 모든 결의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의 결의 외에, 지배인의 임면과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상법 제389조)과 신주 발행사항. 전환사채 발행사항, 신주 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제513조 제2항. 제516조의 2 제2항), 이사의 경업과 자기거래의 승인(상법 제397조 제1항. 제398조), 중간배당의 결정(상법 제527조의 2 제1항, 제527조의 3)등도 그 결의사항으로 되어있다.

## ② 社外理事로서의 企業情報把握機能

비록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의 구성원으로서 상근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권리, 의무와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상시 회사에 근무할 수 없고 대부분의 사외이사는 다른 직업과 겸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외이사의 임무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과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상법은 사외이사의 정보접근에 관하여 배려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1999년 9월 22일에 공표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기업은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 인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다.<sup>90)</sup> 이 정보접근권은 사외이사의 권리가 아니고 그 임무에 따르는 권한이

89) 이균성,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지위”, 「상사법 연구」, 제20권 1호(2001), 238면.

90) 1999. 9. 22, 기업지배모범규준, p13-14.

므로, 정보접근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는 것은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 382조, 민법 제683조)의 위반이 된다.

## (2)社外理事의 特殊한 機能

### ① 專門性 補完者로서의 機能

사외이사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사, 그 중에서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사 중에서 영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을 따로 가지면서 특정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한다. 변호사, 교수, 타 기업의 경영인 등이 사외이사로 많이 영입된다. 따라서 기업차원에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 보다 이사회에 자문을 구함으로써 경영진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데 사외이사를 활용한다. 사외이사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조언 및 권고를 하고, 최고 경영자의 결정을 검토하기도 한다. 또한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최고경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외이사를 영입하기도 한다.

### ② 監督적 機能

사외이사제도의 특징적인 기능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 기능이 가장 중점이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이사의 자기거래, 회사재산의 유용 등과 같은 이해관계충돌상황을 감독하고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하였는가 하는 경영감독기능이 그것이다. 따라서 사외이사 선임 시에 회사와 이해관계 없는 자가 선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2. 外監法상의 監査制度

한국의 감사제도는 상법상의 감사 이외에도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 되는 주식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규모의 회사에 있어서는 주주, 채권자, 종업원, 일반공중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며 그 재무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하여 회사의 감사에 의한 감사 외에 독립된 회계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반영시킴으로써 회계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1) 對象企業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된다(외감법 제2조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②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③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④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⑤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⑥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⑦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 실시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등이다.

## 2) 資格

감사인인 회계법인 (제12조의 2) 또는 감사반이어야 한다(외감법 제3조 제1항).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인의 형태와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러나 감사의 대상인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동조 3항). 그리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

는 4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동조 4항).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로 하여금 당해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동조 5항). 그리고 감사반인 감사인은 협회등록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동조 6항).

### 3) 選任

회사는 매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외감법 제4조 1항). 외부감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다(동조 2항 본문).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동 위원회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간주한다(외감법 제4조 제2항). 그러나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직전사업연도에 동법 제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한 단서).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외감법 제4조 3항,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제1항).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외감법 제4조의 2).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변경하거나 선정된 경우(외감법 제4조의 3 제1항)에는 당해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외감법 제4조의 2 제1항). 즉 종래에 외부감사인을 두기 위하여 모든 회사는 매년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 단위로 동일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였다.<sup>91)</sup> 이 경우에 외부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의 사업연도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외부감사인을 외부감사인선정위원회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종래에 법정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나 감사인선임절차를 위반한 회사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에 있어서 “당해회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외감법 제4조의 3 제1항 8의 2호)를 추가하였으며 현재 위원회가 감사인을 1년 단위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정요건의 경중에 따라서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정사유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경우도 금융감독기관의 장의 필요에 따라서 피감독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외감법 제4조의 3 제1항 8호)

#### 4) 權限과 義務

외부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관계회사와 계열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고,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외감법 제6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외감법 제10조 제3항). 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

---

91) 최기원, 「신회사법론」(1999), 650면.

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외감법 제10조 제3항). 이와 같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감사로부터도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간의 업무연계를 강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포함하여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1주일전에,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감법 제8조 외감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외부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는 그 직무상, 득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고(외감법 제9조 본문), 또한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외감법 제10조 제1항). 그리고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외감법 제10조 제2항). 한편 외부감사인 또는 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외감법 제11조).

## 5)責任

외부감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감사반인 외부감사인의 경우는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외감법 제17조 제1항). 또한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동조 제2항).<sup>92)</sup>

92) 판례는 “주식투자자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공시된 회계법인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분식된 재무제표

그러나 외부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는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동조 5항). 또한 외부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있는 경우에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들 모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조 제4항).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동조 제7항). 한편 이와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은 형사책임도 진다(외감법 제20조).

---

와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투자판단의 자료로 삼아 그것이 투자대상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증권회사직원에게 일임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주식시세를 검토한 후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그 후 주가가 급락하였다면, 회계법인은 투자자가 위와 같은 분석결과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7.9.12, 96 다 41991.).



## 第4章 株式會社監査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第1節 問題點

세계 각 국의 회사법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가 회사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라면 경영진의 경영을 감독 또는 감사하는 경영감독구조 역시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상법은 경영진의 경영에 대한 이사회에 의한 사전적, 내부적인 경영감독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이사회제도를 받아들인 결과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인 동시에 경영감독기관이다. 그런데 종래 상법은 이사회와는 별개의 감사제도를 두고 있었고, 1999년의 상법 개정에 의하여 종래의 감사에 갈음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상법은 이사회 이외에 다시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경영진에 대한 감독은 이사회에 의한 감독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라는 이중의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같은 감독의 중복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종래의 감사가 이사회로부터 독립한 기관이었음에 비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의 일개 위원회로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삼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아래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감사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1. 監事를 두는 경우

## (1) 監事의 獨立性 問題

감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그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감사의 선임절차에서 시작하여 그 임무수행은 물론 해임의 측면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인데 선임의 측면을 보면 현실적으로 감사선임은 대주주나 이사회에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발행주식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관행상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는 기업은 상장회사에 있어서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할 감사가 사실상 상법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선임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은 선임 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사의 독립성의 결여의 근본적인 원인이 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주주총회가 아닌 대주주, 대표이사, 이사회 등이 행사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감사에게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공정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서도 자격의 제한을 가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독일의 경우 자연인 또는 행위능력자에 한하여 감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독일 주식법 101조 1항), 영국의 경우 회계전문가를 감사의 자격요건으로 하면서 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자 및 그 배우자와 법인은 감사의 취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영국 회사법 389조 6항), 일본의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의 감사의 결격사유를 법정하고 있다(일본 상법 280조 1항, 254조의 2). 이와는 달리 우리 상법은 감사의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학설의 분분한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감사의 선임자격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감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증권거래법 191조의 12 등)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상법에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어 이사의 임기와 동일한데 그로 인해 감사의 선임에 대한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감사의 독립성보장을 위해 감사의 임기를 이사의 임기보다 더 장기로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01년 개정상법에서 감사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한 바 있다.

상법은 감사는 임기 중이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상법 415조, 385조 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감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활동에 큰 심리적 장애가 되며, 임기보장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감사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한 상법의 제409조 2항의 입법취지와 일관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문제가 있다. 현행 상법은 감사의 보수는 이사의 경우와 같이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415조, 388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사의 보수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나 대주주 등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의 의사에 따라 감사의 보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sup>93)</sup> 따라서 감사의 보수와 감사비용의 측면에서 감사는 회사의 지배권자의 절대적 영향하에 놓임으로써 감사의 독립성 제고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법은 감사의 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가 그 비용이 직무집행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역시 감사의 지위를 약화시키

93) 이에 대한 정찬형 외, 앞의 책, 48쪽.

는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sup>94)</sup>

## (2) 監事의 專門性 問題

감사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독립성이 중요하지만, 감사가 그 선임과정에서나 업무의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업무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때에는 실효성 있는 감사를 기대할 수 없다. 실무상의 측면에서 보면 감사의 독립성의 결여에 못지 않게 그 전문성의 결여가 감사제도의 유명무실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상법은 현대 기업회계의 복잡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자격에 대하여 겸임금지의 규정 외에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의 적당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경험이나 기술이 없더라도 감사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해당분야의 교수 등 감사업무에 관련된 전문지식에 종사하고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감사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95)</sup> 따라서 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감사업무와 관련된 전문직에 전문자격 소지자로 감사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감사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감사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는 감사의 적정한 업무집행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監查委員會 制度상의 問題點

---

94) 정동윤, 앞의 책, 483쪽.

9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제308호, 2000,42쪽 이하.

## (1) 理事會와 監査委員會의 權限衝突

이사회는 이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그 권한은 업무집행의 적법성은 물론이고 합목적성, 타당성, 효율성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되므로 기존의 감사가 갖고 있던 권한, 즉 회계감사권과 업무감사권을 그대로 갖는다. 여기서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권은 이사회의 업무감독권과 충돌하고 따라서 이른바 기관권한분배의 원칙상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이사 중의 일부로 구성되는데, 일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똑같이 업무감사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또 이사의 일부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가 직무집행하는 것의 당否를 심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sup>96)</sup>

## (2) 自己監査의 問題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가운데 이사회가 선임하므로 감사위원의 지위는 이사로서 지위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한다. 감사위원의 이러한 “지위의 이중성”에 따른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감사”의 가능성이다. 즉 감사위원이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자격으로 자신이 참여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것으로서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된다.

---

96) 정동윤, 전계논문, 12-13면; 권종호, 전계논문, 96-97면.

### (3) 獨立性의 問題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결의에 따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려면 감사위원회가 그 조직 기능에 있어 이사회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선 조직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회가 그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감사위원회는 그 조직에 있어서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직무수행상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부분 위원회로서의 지위에 있어(상법 415조의 2 제1항),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소집된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를 함으로써 이를 시정할 수 있다(상법 393조의 2 제4항). 이 규정을 문리대로 감사위원회에 적용한다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사회에 종속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4) 監査의 實效性問題

위법사실이 발생한 경우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그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있느냐에 있는데 종래 감사는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그 위법행위를 찾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감사위원회는 회의체로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할 뿐이므로 실무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 및 발견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없다. 즉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고 감사권한을 강화시키더라도 그 감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위법사실의 발견이 어려워, 법률상 권한은 크더라도 실제적 권한행사는 미약한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에 있어서 제 힘을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 第2節 改善方案

### 1. 監事制度의 改善方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원인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독립성 결여와 전문성의 결여에 있다. 따라서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은 감사에 대한 인사권뿐만 아니라 경영자인 이사에 대한 인사권도 주주총회에서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도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사는 경영자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므로 효과적인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감사제도를 감사기관으로서 계속 존치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경영자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sup>97)</sup>

둘째, 상법상의 감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한국의 실태에 있어서는 감사가 지배주주, 대주주, 재벌오너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셋째, 종래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형식화함에 따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회계감사의 실효를 거두려 하였으나, 이 법률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본문)라고 하고 회사는 이 사실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3항). 그러나 외부감사인 선임을 감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외부감사인의 해임에 대해

<sup>97)</sup> 임중호,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변천과정”,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01)173면.

여는 이 법률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감사와 외부 감사인이 상호 연계를 통해서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감사계획을 세우고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회사에 관한 자료와 정보교환에 있어서 외부자인 외부감사인에게 감사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 (1) 監事의 獨立性 確保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어야 한다. 현행상법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하면서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100분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별 실효성이 없으며,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 또는 소액주주들이 감사로 선출되거나 감사선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의결권 제한규정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대주주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sup>98)</sup> 또한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거나 강화함은 물론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의 도입도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 그리고 감사제도를 충실화하기 위해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도 일정한 수의 종업원 대표를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독일 공동결정법(제15조 제2항)과 중국 회사법(제52조, 제124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대표를 감사로 선임하게 되면 회사의 내부 사정에 비교적 정통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회사의 사회성을 확보하는 법적 기틀로서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증권거래법이 감사의 해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현행 상법상으로는 감사는 중대한 사유가 없더

98) 양동석,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의 재구성”, 「상장협논집」(1999), 7면.



라도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경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상법 제415조, 제318조 제1항), 비록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만(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 이러한 요소는 감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활동에 큰 심리적 장애가 되며, 임기보장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임에 있어서도 감사의 선임 시와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감사의 해임사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임기 만료 전 해임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행상법은 해임 시에 감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임 시는 물론 퇴임 시에도 의견진술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사의 임기도 연장 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임기 연장은 감사의 지위의 강화와 신분보장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신분보장의 확보는 감사의 보수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 상법은 감사의 보수에 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실무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증권거래법의 감사와 이사의 선임이나 보수 결정시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하도록 한 규정(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제2항)을 상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감사의 비용에 관하여도 현행상법에 특별 규정을 두어 감사비용청구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감사의 지위의 보장과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감사의 보수 및 감사비용과 관련한 규정을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감사의 보수 및 감사비용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 두고 있다(일본 상법 제279조).

## (2) 監事의 專門性 確保

현행상법은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의 직무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감사록작성 등에 관한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상법 제414조), 감사의 자격

에는 제한이 없어 비전문가나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과 같은 비독립적인 인사가 감사로 선임되어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법은 현대 기업회계의 복잡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자격에 대하여 겸임금지의 규정 외에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의 적정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경험이나 기술이 없더라도 감사가 될 수 있다. 상근감사의 경우 사내의 기획이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사의 지휘를 받을 염려가 있으며, 비상근감사의 경우에도 계열회사의 임직원인 경우가 많아 감사의 독립성유지라는 겸임금지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sup>99)</sup>

또한 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의 적법성이나 회계보고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실무와 회계전문, 관련법규 등에 관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의 기업환경을 이해하고 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보고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학교수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전문직 종사자나 전문자격 소지자로 감사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sup>100)</sup>

## 2. 監査委員會制度의 改善方案

### (1) 獨立性 確保를 위한 改善方案

#### ① 所有構造改善

---

99) 정석우 “감사의 감사기능활성화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74-75면.

100) 최기원, 전계논문, 10면.

소유구조개선이란 문제는 궁극적으로 감사위원회 도입배경의 요소이다. 즉, 소유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선결과제이면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다. 한국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997년 IMF를 계기로 크게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축소 또는 철폐되고 외국인 지분이 확대됨에 따라 적대적 M&A의 위협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고 또한 증시 침체에 따른 주가관리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1998년 초 정기주주총회 때부터 활발하기 시작한 소액주주운동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유지분율을 줄일 경우, 주주총회에서 경영투명성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공세를 당해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sup>101)</sup>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집중화는 주로 계열기업 상호간의 상호출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촉진 및 경제력 집중완화의 일환으로 기업공개, 금융종합소득의 과세,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변칙 상속·증여행위의 규제, 소유분산우량기업의 선정·우대, 상호출자의 규제, 공기업의 민영화정책과 국민주의 보급, 우리사주조합제도, 스타트업제도 등을 실시하여 왔다.

결국 소유구조 개선의 근본적 대책은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해체하고 주력사업한 두개만 운영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선단식 경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독점규제법상에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또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즉, 소액주주, 채권단, 종업원, 하도급기업, 소비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경영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높은 성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과거와 같이 정경유착속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차입의 간접금융은 지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지속적인 증자를 통하여 주식이 분

101) 김재형, “기업소유구조의 변화”, 한국기업법학회 2000년도 동계학술대회 자료(2000.2.11개최).2면.

산되는 과정을 ‘기업발전론적 소유구조변화’라고도 부르며 미국의 소유구조변천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sup>102)</sup>

## ②經營管理機構의 分離

현행 상법상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93조 2항). 이사회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임과 동시에 업무집행감독기관을 겸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가 갖는 이사에 대한 감독권은 상하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또 위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 감사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표이사 등의 경영자는 반드시 이사의 구성원인 이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영진과 이사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최고 경영자는 이사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으나 집행임원 등의 경영진은 이사의 구성원인 이사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규모 공개회사의 이사회는 부속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임원의 직제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나 집행임원 또는 상급집행임원이 경영진에 해당하고 이들의 최고 대표가 최고경영자이다. 집행임원의 법적 성격은 사용인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대리인이다. 미국의 집행임원은 이사와 별개로 주주에 대하여 법률상의 경영책임을 지고 이사와 동일하게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며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외이사가 많으므로 이사를 겸하지 않는 집행임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사회는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정책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이 담당한다. 회사의 합병, 정관 변경 등과 같은 중요 경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만이 이사의 몫이고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에게 위임함으로써 감시기능만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103)</sup>

102) 정대순,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51-52면.

주법들의 태도를 보면 필요적 집행임원을 특정하지 않은 주는 3개에 불과하고, 5개의 주가 사장과 총무를, 39개의 주가 사장과 총무 및 재무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주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한다.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임원은 부속기관이 정한 직무 또는 부속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거나 다른 집행임원의 직무를 정하도록 이사회로부터 수권받은 집행임원이 정한 직무를 가진다. 그러나 집행임원의 직무가 현실적으로 이에 그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최상위의 집행임원은 그 직무상 통상적인 업무 전체에 미치는 묵시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업무담당이사, 사용인 겸무이사들이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많은 비등기 임원들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임원은 사용인의 지위에 있고 이사의 지위를 겸하는 수가 많으며 회사법상의 경영기구가 아니어서 회사법상의 업무집행권이 없다는 점이 미국과 다르다. 이에 대해서 등기 또는 비등기 업무담당이사과 사용인 겸무이사 그리고 상급직의 비등기 임원을 집행임원으로 하여 이들에게 미국법상의 집행임원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여 회사법상의 업무집행권과 의무 및 책임을 부여하고 이사회는 다수의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이사로 구성하여 전략적 의사결정만을 하자는 견해도 있다. 전경련 회장단 회의이세도 등기이사가 아닌 전무이사, 상무이사, 관리이사, 총무이사, 또는 전무, 상무, 이사대우, 이사보, 상무보, 상무대우, 연구위원, 전문위원 등에게 미국식의 집행위원의 지위와 자격을 부여하고 등기이사와 구분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집행임원의 제도는 소유의 분산과 소유,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성립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소유가 집중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집행임원을 도입할 필요는 없고

---

103) 김재형, 전계논문, 335면.

소유분산 및 소유, 경영 분리의 진행상황과 함께 자연스럽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소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되어야 한다.<sup>104)</sup>

### ③ 社外理事制度의 定着

사외이사제도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바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 ④監査委員에 대한 選任 및 解任方法의 改善

감사위원은 이사로서의 지위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한다. 따라서 감사위원으로서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상법 제382조 제1항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상법 393조의 2 제2항 제3호). 그런 의미에서 감사위원의 독립성은 그 선임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 모두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고, 만일 주주총회나 이사회 중 어느 한 기관만이라도 경영진에 의해 지배되어 형해화 되어 있다면 감사위원회제도 그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sup>105)</sup>

증권거래법에서는 감사위원회설치가 강제되는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2분의 1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외이사는 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 제3항 및 제54조의 5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23 제1항).

이사회가 특정인에 의해 지배되어 형해화 되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추천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되기는 하지만 감사위원에 대한 최종선임권은 어디까지나 이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104) 김재형, 전계논문,335면.

105) 권중호,「일본의 기업지배구조동향과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개선」, 「상장협」춘계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1999), 72면.

구성하여야 하므로(동법 제191조의 16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3 제1항) 이사회가 특정인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현실에서 그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고 따라서 최소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선임권과 해임권은 주주총회에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⑤ 獨任制 形態의 監査委員會 導入

한국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주체는 감사위원회이고 감사위원은 단지 그 구성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이른바 합의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독임제를 취하고 있다. 감사위원은 개개인의 독자적 감사직무를 수행하고 위원간 의견이 다를 경우 감사보고서에 개별적의견을 부기한다. 합의에 방식은 비교법적 측면에서 보면 독일식의 감사회와 유사하지만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 하에서는 감사위원 중 다수가 독립성에 문제가 있으면 소수가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려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른바 “독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협의체”(supervisory meeting)방식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감사의 주체는 감사위원으로 하면서 감사위원회는 단지 감사의 권한행사를 용이하도록 하는 보좌하는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감사회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운영방식으로 협의체 방식을 취한 것은 일본감사제도의 장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감사 개개인이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감사직무를 수행한다”는 이른바 독임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회를 협의체로 운영할 경우 감사회의 기능은 집단으로서 감사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감사간에 감사사항에 관한 역할분담,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 등을 행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감사의견이 형성, 표명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직무가 된다.

## (2) 自己 監査可能性에 대한 改善方案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적법성감사에 국한되며 그 행사시기도 사후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자기감사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타당성감사에까지 미치며 그 권한 행사도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예컨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이 감사위원이 판단하기에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혹은 타당성을 결하고 있으면 결의 성립전에 감사위원의 자격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한 감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기감사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사후감사의 경우에도 이때의 감사는 이미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집행이 이사회 결의의 내용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393조의 2 제4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감사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법 기술상 입법은 요한다 할 것이다.

## (3) 監査委員會와 理事會의 權限衝突 解決方案

이사회와 업무 감독권과 감사의 업무 감사권의 충돌을 놓고 다수설은 감사의 업무 감사권의 범위를 적법성 감사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감사위원회는 기존의 감사의 권한을 갈음하므로 같은 입장에서 해석 될 수 있다.

한국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도입이 감행되었던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이사회와 무기능화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범위 역시 이사회와 감사의 업무권에 대한 학설(다수설)의 태도와는 달리 위법성은 물론이고 타당성감사에까지 미치며, 그리고 이 권한은 사후적으로는 물론이고(사후감사) 사전적으로도 행사되



어야 하는 것(사전감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사)과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감사위원회 위원이 수임인으로서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6항, 제414조 제2항). 따라서 이사로서의 책임은 부담하면서 감사권의 범위는 기존 감사와 같이 적법성에만 한정하는 것은 책임은 가중 시키면서 그 활동영역은 축소시켜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實效性確保를 위한 內部監査人の 導入

감사위원회의 감사권한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내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이나 회계보고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내부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회의체인 감사위원회를 보조하여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는 기간에 사내에서 활동하여 회의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회의체는 일정 사안에 대해 가부의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인 감독기능이나 사내 업무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업원으로서 회사에 종속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그 선임과 해임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러한 사내감사인의 지위를 감사위원회의 하부에 둬으로써 실질적인 업무 및 회계보고의 감독기능외에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위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의 창구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

## 第5章 結 論

회사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그 관리와 운영이 건실하고 공정해야 하며 또 투명해야 한다. 여기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와 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공개형 대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감사제도에 관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경영기관과 감독기관의 구성이 일원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원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가 아니라 각 형태의 실효적 기능이다. 특히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가 비록 일원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경영기구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원제에 유사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한 상법의 개정역사는 감사제도강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감사의 독립성과 그 감사 실시의 충실성을 보장함으로써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상법은 1997년 개정을 통하여 이른바 일원주의에 입각한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자리잡아온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를 포기하고, 미국의 기관구조적 특징인 경영집중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이사회 중심의 일원제는 기업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본질은 소유자 보호, 즉 주주의 이익보호라는 점이다. 경영진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고가 그 기본바탕인 것이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자본시장이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시장이기보다 주식발행을 통한 주식시장으로 형성되는 미국의 경우에 적합한 제도로 평가되어 왔다. 이는 주주 주권주의로 인해 기업 채권자나 근로자 등 이

해관계인 보호에 미흡할 수 있고, 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단기 경영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경영합리화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주식시장을 통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구조가 약한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 구축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감독기능만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독일식 이원제가 오히려 유효한 체제일 수 있다. 이원제는 법률체제상 자기감독의 가능성이 없으며, 미국의 경우도 ALL원칙 등 여러 규칙상에서는 일원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경영을 담당하고 이사회는 감독기능만을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원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감독이라는 차원을 떠나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내부에 두고 있는 미국식 일원제 시스템은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일원제도의 핵심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의 확보이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감독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더불어 효율성을 확보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총수의 독단과 전횡이 만연하던 기업구조 속에서 감사위원회 도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사외이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독립성을 갖추려면 지배주주나 경영진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외부인사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외이사가 과연 회사의 현실적인 여러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가는 회의적이다.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 어두울뿐더러 감사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경영진에게 얻어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감사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감사위원 중에는 경영진으로부터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얻어내는데 효과적인 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에게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은 상근이사로 하여

감사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경영진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개선권고안에서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현행법처럼 3분의 2이상 사외이사면 족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일부 감사위원은 상근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사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처럼 자본주의 역사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오지 못한 현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외이사로 일할 전문인력 자체의 확보가 어렵다. 이것은 어떤 법적 정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없고, 일정한 시간과 사회적 상황에 의하여 해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보수문제도 현실화 되지 않은 사외이사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외이사의 선임방식이다. 실질적으로 증권거래법은 사외이사가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위원 중 반드시 회계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바람직하다.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궁극적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진실성에 달려있고 감사위원의 회계능력 여부가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은 상법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변화를 감수하면서 이원제 구조에서 일원제 구조를 받아들이면서 도입한 것이다.

미국에서 발전되어 왔던 감사위원회제도가 그 여건과 기업경영풍토를 달리하는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려면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

감사위원회제도는 기업 경영투명성의 제고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위기상황에의 신속한 대처, 그리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시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간접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법상의 감사와 비교하여 장점은 가지고 있다. 다만 전

문적인 사외이사 인력의 확보와 지배주주로부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사외이사의 프로필을 공개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용이한 정보접근을 위한 입법적 배려, 보수문제의 현실화 등의 개선 노력이 뒷받침이 중요하다.

종래 한국의 주식회사법의 입법과 그 개정은 신속성, 과감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외국법을 쉽게 수용하였고 또 최근에는 외압에 힘 있게 대처하지 못하여 점점 독자성을 결여해 가는 데 대한 반성의 여지는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내지 상법의 처지는 소수의 규정이나 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우와 같은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상법이 일본 상법과 그 기초를 같이 하므로 회사법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는 양국이 함께 그 원인을 분석하고 공동의 처방을 강구하기 위한 협력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널리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제국이 공동운명체로서 EU에 비견할만한 통일적인 법제의 정립을 위하여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구상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I. 국내 문헌

#### 單行本

- 김영호, 「회사법신론」 팔마도서(2000).  
법무부 「상법(총칙,상행위,회사편)개정안해설」 법무부(1995).  
서돈각,정완용, 「상법강의(상)」 법문사(1999).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2000).  
이범찬, 「주식회사감사제도론」 법문사(1976).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8편,박영사(2000).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2001).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2001).  
정희철, 「상법학(상)」 박영사(1989).  
최기원, 「新회사법론」 박영사(2001).

#### 論文

-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2001). 제19권  
\_\_\_\_\_, “기업소유구조의 변화”, 한국기업법학회 2000년도 동계학술대회 자료.  
\_\_\_\_\_,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1999).  
\_\_\_\_\_,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변천과정”,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2001).

강희갑,“우리나라의 지배구조의 입법론적 검토” 「상장협」 춘계호, 한국상장사협의회(1998).

권상로,“상법상 주식회사 감사제도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6집, 한국기업법학회(2000).

권종호,“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위원회제도의 과제”, 「상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2001).

권종호,“일본의 기업지배구조동향과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개선”, 「상장협」 춘계호, 한국상장회사 협의회(1999).

김성기,“주식회사의 감사기관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김영균,“주식회사의 감사제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

김재형,“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상사법연구」 제20권 1호(2001).

손주찬,“상법개정에 있어서의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특색”, 고시연구(1983.2).

양동석,“주식회사의 감사기관의 재구성”, 상장협논집(1999).

이균성,“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지위”, 「상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2001).

이기수,“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2001).

이범찬,오정환,“주식회사의 감사제도”, 한국상장협의회(1997).

임중호,“西獨株式法 112조에 의한 감사회의 회사대표권”, 「상사법연구」 제6권, 한국상사법학회(1987).

전삼현,“독일의 자본시장과 감사회”, 경영법률, 제10집, 한국경영법률학회.

정동윤,“한국감사위원회제도의 허와실”, 「상장」 2000년 2월호.

정명석,“주식회사의 기관구성과 권한의 분배”, 「상사법연구」 제11권, 한국상사법학회(1992).

홍석제,“감사의 지위 및 책임”, 서울:법원도서관 「裁判資料」(1987).

## II. 외국 문헌

- 久保田音二郎, 「監査役監査制度」(東京:稅務經理協會,1974),
- 吉永榮助, “二層式機關組成: 監視機關の分離と強化の提案とこの根據”,日.「現代商事法の重要問題」(東京:經濟法會,1984),
- 大賀祥充, “監査役制度の改正”, 「法學研究」, 第66卷 12號(1993.12),
- 北村雅史, “經營機構改革と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商事法務 第1603號, 2001
- 商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要綱 第二の三 1.
- 元木伸, “監査役制度の變遷”, 企業會計,第51券 1號,1999
- 前田庸, “商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要綱の解説(III)”, 商事法務 第1623號, 2002,
- 河本一郎. 「現代會社法」,新訂第五版(東京:商事法務研究會, 1991),
- Robert W.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in a Nutshe*(4th ed),st.paul:WEST PUBLISHING CO.1996.
- New Yo Stock Exchange,"Independent Audets and Audit Procedures",122 Accountant 388(April,1940).
- Louis Braiotta, "Historical Perspective on Audit Committees(Appendex B)",The Audit Committee Handbook(3rd ed)
- American Stock Exchange,Listed Company Guide §121.
- Esser,Bank Power in West Germany Revised,13 West.Politics,
- Lutter,Das neue Gesetz für kleine Aktiengesellschaften und zur Deregulierung des Aktienrechts, AG 1994, S.445.